

청주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단22883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윤현진

피고 1. A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권

3. 주식회사 C

4. D

변론 종결 무변론(피고 A)

2019. 12. 12.(나머지 피고들)

판결 선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금 102,954,307원과 그 중 금 101,943,305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4. 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 3. 26.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3. 26. 접수 제292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8. 3. 23.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2018. 3. 26. 접수 제293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2018. 3. 23.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2018. 3. 26. 접수 제293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과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나머지 피고들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고 회사 명칭으로만 피고를 특정한다), D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청주시 청원구청장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A이 2017. 6. 13. 원고의 신용보증(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12.까지) 아래 E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은 2018. 3. 16.부터 위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8. 8. 28.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101,943,3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은 아래와 같이 피고 B, C, D에게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가) 피고 A은 2018. 3. 26. 피고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3. 26.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33,000,000원인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A은 2018. 3. 23. 피고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3. 26.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51,500,000원인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은 2018. 3. 23. 피고 D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3. 2.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46,400,000원인 주문 제2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고, 그 가격과 당시 보유 중이던 2002년식 그랜저XG 차량 가격을 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신용보증금액 10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은 E은행 또는 원고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무 이외에도 F조합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 채무(최고액 합계 18,200,000원), G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 채무(최고액 26,000,000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B에 대한 전기료 대납 구상채무, 피고 C, D에 대한 각 물품대금 채무, 유한회사 H, I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가압류 채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신용카드 채무 등이 있었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였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무렵인 2018. 3. 1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장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C, D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과 수익자인 위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 B, C,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위 피고들의 주장요지 가) 피고 B은 2016. 7. 14. 피고 A과 그 동업자인 J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2018년 3월경 피고 A이 전기료 약 25,000,000원을 미납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바, 전기료 미납으로 인한 단전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건물 임대료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피고 B의 건물까지 함께 단전될 위험이 있어 피고 A으로부터 2018.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서 2018. 4. 25.부터 2018. 6. 25.까지 위 미납 전기료 합계 24,513,000원을 대납하였다. 2018. 3. 26.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는 별다른 선순위 근저당권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 나) 피고 C, D 역시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로서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섣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 B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음에 있어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갑 10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A 운영업체 인접 건물에서 발포 플라스틱 생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피고 A 운영업체로부터 플라스틱을 공급받는 물품거래관계를 맺어온 점, 그 주장과 같이 피고 A이 25,000,000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미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피고 A 운영업체의 경영이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했던 점, 피고 B이 대납한 전기료를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수단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일 텐데도 달리 그러한 조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만 설정 받았는바, 당시 피고 A 운영업체의 경영·재정상황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 B이 2018. 3. 26. 당시 자신뿐만 아니라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함으로써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볼 만한 사정들이 나타날 뿐이다).

다) 다음, 피고 C, D의 위 주장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설행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 수익자 역시 이를 알았다는 점이 추정되는 이상,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각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선의의 수익자라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 B, C, D의 각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있어 각 인용한다.

판사조형우

별지